|  |
| --- |
|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다이나믹아시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변경 사유 :** ① 채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문성호, 전춘봉 → 문성호)

② 제1기 제무재표 확정에 따른 갱신

**□ 효력발생일** : 2018. 2. 28.

**□ 변경 내용**

|  |  |  |  |
| --- | --- | --- | ---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요약정보 |
|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_보수 | 제1기 재무재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 **2017. 12. 27. 기준** |
|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1]. 투자전략2. 투자전략 | 예시 투자비중 변경 | <정정 전> | **<정정 후>** |
|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1]. 투자전략4. 운용전문인력 | 채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최근 기준으로 기재 | 문성호, 전춘봉2017. 6. 30. 기준 | **문성호****2018. 1. 31. 기준** |
|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1]. 투자전략5. 투자실적 추이 |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 **2017. 12. 27. 기준** |
|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3. 위험관리 | 변동성 관리 전략 추가 | - | **① 변동성 관리이 투자신탁은 목표변동성을 연 10% 이하로 설정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페어트레이딩 전략 등의 확대로 총편입비중(Gross Exposure)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을 매주 확인하여 목표변동성에 근접할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변동성을 낮춰 급격한 수익률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량 설정 및 환매, 시장상황 등에 따라 목표변동성을 초과될 경우, 투자전략,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에 따라 운용역의 판단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이 목표변동성을 초과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내에 목표변동성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예시 투자비중 변경 |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국가 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50%이상, 채권에 90%이하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파생형)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순투자비율(Net Exposure) -30~+30% 수준, 총투자비율(Gross Exposure)은 90~130% 수준으로 관리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롱숏전략을 통해 시장변동성과 유사하거나 보다 낮은 변동성을 유지할 계획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 변화 및 주식과의 가치변동 상관관계,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의 높은 투자위험 등을 이해하고,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롱숏전략에 대한 투자위험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국가 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50%이상, 채권에 90%이하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파생형)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순투자비율(Net Exposure) -30~+30% 수준, **총투자비율(Gross Exposure)은 90~260%** 수준으로 관리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롱숏전략을 통해 시장변동성과 유사하거나 보다 낮은 변동성을 유지할 계획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 변화 및 주식과의 가치변동 상관관계,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의 높은 투자위험 등을 이해하고,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롱숏전략에 대한 투자위험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5. 운용전문인력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채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최근 기준으로 기재 | 문성호, 전춘봉2017. 6. 30. 기준 | **문성호****2018. 1. 31. 기준**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다. 모자형 구조[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예시 투자비중 변경 | - 한국 및 아시아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으로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성과 달성을 추구합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순편입비중은 평균 -30%~+30% 수준(총편입비중 90%~13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으로 롱숏포트폴리오 구축 | - 한국 및 아시아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으로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성과 달성을 추구합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순편입비중은 평균 -30%~+30% 수준**(총편입비중 90%~26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으로 롱숏포트폴리오 구축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예시 투자비중 변경 | <정정 전> | **<정정 후>**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2) 위험관리 전략 | 변동성 관리 전략 추가 |  | **②변동성 관리이 투자신탁은 목표변동성을 연 10% 이하로 설정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페어트레이딩 전략 등의 확대로 총편입비중(Gross Exposure)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을 매주 확인하여 목표변동성에 근접할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변동성을 낮춰 급격한 수익률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량 설정 및 환매, 시장상황 등에 따라 목표변동성을 초과될 경우, 투자전략,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에 따라 운용역의 판단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이 목표변동성을 초과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내에 목표변동성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예시 투자비중 변경 |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국가 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50%이상, 채권에 90%이하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파생형)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순투자비율(Net Exposure) -30~+30% 수준, 총투자비율(Gross Exposure)은 90~130% 수준으로 관리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롱숏전략을 통해 시장변동성과 유사하거나 보다 낮은 변동성을 유지할 계획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 변화 및 주식과의 가치변동 상관관계,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의 높은 투자위험 등을 이해하고,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롱숏전략에 대한 투자위험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국가 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50%이상, 채권에 90%이하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파생형)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순투자비율(Net Exposure) -30~+30% 수준, **총투자비율(Gross Exposure)은 90~260%** 수준으로 관리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롱숏전략을 통해 시장변동성과 유사하거나 보다 낮은 변동성을 유지할 계획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 변화 및 주식과의 가치변동 상관관계,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의 높은 투자위험 등을 이해하고,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롱숏전략에 대한 투자위험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 **2017. 12. 27. 기준**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나. 과세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1. 재무정보 |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 **2017. 12. 27. 기준**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 **2017. 12. 27. 기준**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 **2017. 12. 27. 기준** |

<정정 전>

|  |  |  |  |  |
| --- | --- | --- | --- | --- |
|  | **비중** | **Gross Exposure** | **Net** **Exposure** | **비고** |
| **롱** | **숏** |
| 주식 | 한국 | ~20% | ~20% | ~40% | -20%~+20% | 현물 거래 |
| 아시아 | ~50% | ~50% | ~100% | -20%~+20% | 스왑 거래 |
| 주식투자비중 | ~70% | ~70% | 90~130% | -30%~+30% |  |
| 채권 | 한국 | ~70% | - | - | - | 주식 매입 및 스왑 거래의 증거금을 제외한 현금을 채권으로 운용 |
| 아시아 | ~20% | - | - | - |
| 채권투자비중 | ~70% | - | - | - | - |

**<정정 후>**

|  |  |  |  |  |
| --- | --- | --- | --- | --- |
|  | **비중** | **Gross Exposure** | **Net** **Exposure** | **비고** |
| **롱** | **숏** |
| 주식 | 한국 | **~30%** | **~30%** | **~60%** | -20%~+20% | 현물 거래 |
| 아시아 | **~100%** | **~100%** | **~200%** | -20%~+20% | 스왑 거래 |
| 주식투자비중 | **~130%** | **~130%** | **90~260%** | -30%~+30% |  |
| 채권 | 한국 | ~70% | - | - | - | 주식 매입 및 스왑 거래의 증거금을 제외한 현금을 채권으로 운용 |
| 아시아 | ~20% | - | - | - |
| 채권투자비중 | ~70% | - | - | - | - |